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. 5. 10 선고 2015가단723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3. 8.

판결 선고 2016. 5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14. 12. 27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"토지 인도일"까지 매월 2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나,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"토지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"로 선택한다).

이 유

1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그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바,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, 2항과 같이 위 토지를 인도하고 위 건물을 철거하며,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함

나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새롬

별지